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(인재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036

발의연월일: 2020. 8. 18.

발 의 자:인재근·소병훈·허 영

송갑석 • 기동민 • 김원이

최혜영 · 최종윤 · 강선우

이해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의무경찰대 및 의무소방원 등의 순직, 공상, 사상 등의 처리와 관련하여 각 기관에 설치된 소관 위원회(경찰의 경우 중앙·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, 소방의 경우 시·도 등에 설치된 운영위원회)의 진료기록 요청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.

이로 인해 진료기록이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서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후 각 기관의 장 또는 심사위원회에 제출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.

또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유공자등의 진료, 건강관리, 보호 및 의학적·정신적 재활과 이에 대한 조사·연구, 국가유공자등의 양 로·요양·휴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,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과 관계 행정기관,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의료기관들 간의 진료기록 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지 않아 국가유공자 건강관리 강화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에 한계가 있으며,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중복·과다진 료가 발생하고 있어, 국가유공자등의 불편함과 함께 과다한 의료비 지 출에 따른 국가재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.

따라서 의무경찰대 및 의무소방원 등의 순직, 공상, 사상 등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「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「의무소방대설치법」에 각각의 근거규정을 신설(시행령, 시행규칙에 명시된 관련 규정을 상향 및 조정)함과 함께 「의료법」에 진료기록 열람권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대체복무자들의 전공사상 심사와 관련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고, 또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에 따라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,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유공자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1조제3항제18호부터 제20호까지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인재근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3038호) 및 「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3041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

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3항에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8. 「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의무 경찰의 진료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
- 19. 「의무소방대설치법」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 중앙공사상심사위원회가 의무소방원의 진료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
- 20. 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 제24조의2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 료공단이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진료기록 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 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(기록 열람 등) ①・② (생	제21조(기록 열람 등) ①・② (현
략)	행과 같음)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,	③
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	
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	
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	
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	
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	
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사・	
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	
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	
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	
아니하다.	
1. ~ 17. (생 략)	1. ~ 17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18. 「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
	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2제3
	항에 따라 보통전공사상심사
	위원회 또는 중앙전공사상심
	사위원회가 의무경찰의 진료
	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
	<u> </u>
<u><신 설></u>	19. 「의무소방대설치법」 제8
	조의2제3항에 따라 보통공사

	<u>상</u> 심사위원회 또는 중앙공사
	<u>상심사위원회가 의무소방원</u>
	의 진료에 관한 자료를 요청
	<u>하는 경우</u>
<u> <신 설></u>	20. 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
	법」 제24조의2에 따라 한국
	보훈복지의료공단이 국가유
	공자등에 대한 진료기록 등
	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